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7. 27.(월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	생활교통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송천, 사무관 강준식, 주무관 최소영 • ☎ (044) 201-3814, 3811
보 도 일 시		2020년 7월 2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8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, 개방주차장으로 운영

- 8월 5일부터 주차공간 함께 쓰는 개방주차장 제도 본격 시행
-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...주차난 해결에 도움 기대

-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제도화 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·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.
-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,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,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·군·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·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,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,

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.

-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주차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
 - 앞으로,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·전파 등을 통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히면서,
 - “시·군·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강준식 사무관(☎ 044-201-381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